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1030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훈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4.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 접수 제538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D 등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48,462,50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71885호)을 발령받았다. 그런데, C이 모친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4. 9.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그 이전을 해주었다.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망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형식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룬다.

2. 판단

가.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한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배우자인 망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고, 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7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한국공항에서,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F병원에서,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2010년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는 다시 F병원에서 청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한국공항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보험금 5,144만 원, 친정 모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저축해 온 적금 등을 자금으로 천안시 서북구 H 대 264㎡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02. 10.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그 소유의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2006. 10. 27. I에게 매도하고 2006. 10. 31.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같은 날 피고는 I로부터 받은 위 매도대금 중 2억 6,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되(거래가액 1억 6,8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6. 12. 21. 망인 명의로 2006.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현재까지도 그 곳에서 살고 있다.

6) 한편 망인은 2011년경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후 일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청소 일을 하며 받는 근로 소득으로 망인을 생전에 부양해 왔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사망 후 그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인 C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반환의무를 상속받은 자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상속지분협의분할 형식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관련 법리는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판사 최재원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외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아파트

1층 631.1466㎡

2층 631.1466㎡

3층 631.1466㎡

4층 620.2266㎡

5층 620.2266㎡

6층 620.2266㎡

7층 620.2266㎡

8층 620.2266㎡

9층 620.2266㎡

10층 620.2266㎡

11층 620.2266㎡

12층 620.2266㎡

13층 620.2266㎡

14층 620.2266㎡

전용부분의 건물외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84.99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지의 표시 :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24587.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24587.4분의 47.1113

